

vol.43  
March, 2021

# 모니터링 리포트

## 이슈포착

- COVID-19와 장애인의 권리  
- 지침에 관하여  
: 번역 : 김윤범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연구원
- 포스트 코로나시대의 장애인 고용, 개선방안  
: 김선규 나사렛대학교 브리즈학부 교수
- 장애인보호작업장의 코로나19 전/후의 변화  
: 영광현 안산밀알보호작업장 사무국장

## 포커스

- 코로나 19와 CRPD  
: 제11조(위기상황과 인도적 차원의 긴급사태)를 중심으로
- 장애 관련 미디어 모니터링 방향과 필요성  
: 사회적 영향력이 큰 미디어의 현 위치



〈출처〉 서울특별시 트위터

서울시는 지난 해 4월 16일부터 주요 서울시청 건물과 N서울타워 등 서울을 대표하는 주요 랜드마크에서 파란색 조명을 밝히는 블루라이트 캠페인(Light it up blue)을 시작했다. COVID-19에 맞서 최 일선에서 헌신하는 우리 의료진에 대한 감사의 표시였다. 블루라이트 캠페인은 유엔이 2008년에 4월 2일을 세계자폐인의 날로 지정한 이래 매년 전 세계적으로 열리는 행사이기도 하다. 한국에서도 2013년 N서울타워와 인천대교가 캠페인에 참여하기 시작해 점점 참여기관 및 개인이 늘어나고 있다. 자폐성 장애인에게 파란은 가장 편안한 색깔이고 희망을, 또 자폐성 장애 자체를 상징한다.

### 지역모니터링센터

- 서울(대표 윤석권) T 02-833-3097 서울시 영등포구 선유로 146, 이앤씨드림타워 1303호
- 부산(대표 김호상) T 051-582-3234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675 우신빌딩 2층
- 대전(대표 안승서) T 042-286-0036 대전광역시 동구 옥천로 176번지 15-4 동진프라자 332호
- 광주(대표 김 랑) T 062-673-0420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중앙로 131번길 17
- 울산(대표 성현정) T 052-289-1254 울산광역시 북구 화봉로 73 세한빌딩 5층
- 경기(대표 안미선) T 031-906-3095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무궁화로 34, 남정시티프라자 806호
- 경남(대표 문숙현) T 055-283-1313 경남 창원시 의창구 신월로 42 토월복합상가 303호
- 전북(대표 김미아) T 063-228-1989 전북 전주시 완산구 만내 4길 6-23
- 충남(대표 박종균) T 041-631-0691 충남 홍성군 홍성읍 법원로47번길 새아스프라자 501호
- 제주(대표 김성완) T 064-751-8096 제주도 제주시 천수동로 30, 201호



# Contents

2021 봄 | Spring

- 02 편집자 편지  
#LightItBlue
- 04 이슈포착 1  
COVID-19와 장애인의 권리  
: 지침에 관하여
- 14 이슈포착 2  
포스트 코로나시대의 장애인 고용, 개선방안
- 26 이슈포착 3  
장애인보호작업장의 코로나19 전/후의 변화
- 30 포커스 1  
코로나 19와 CRPD  
- 제11조(위기상황과 인도적 차원의 긴급사태)를 중심으로
- 38 포커스 2  
장애 관련 미디어 모니터링 방향과 필요성
- 48 영화평  
중도장애인의 장애수용 과정  
〈펭귄 블룸〉

발행인 이권희  
편집인 김용구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선유로 146  
이앤씨드림타워1303호(우)07255  
Tel 02) 833-3097  
Fax 02) 833-3093  
홈페이지 <http://www.ableinfo.co.kr>  
이메일 [ablecenter@hanmail.net](mailto:ablecenter@hanmail.net)  
디자인 한빛인쇄 051) 515-1239

## #LightItBlue

지난 해 4월은 전 세계 도시의 랜드마크는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상징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역사적인 건물, 주요 스포츠 경기장 및 행사 장소, 심지어 나이아가라 폭포까지도 최전방에서 COVID-19 대유행에 대응하는 의료 전문가 또는 필수 돌봄 노동자들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LightItBlue, #MakeItBlue 캠페인에 참여했습니다. N서울타워도 서울시청 건물도, 주요 시가지에도 푸른 빛 조명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캠페인은 의료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감사와 경의를 표하기 위해 영국 전역의 주요 랜드마크들이 푸른색 조명을 밝히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푸른색 조명을 켜는 캠페인은 세계자폐인의 날인 4월 2일이 되면 매년 전 세계가 함께 해오고 있는 행사이기도 합니다. 캠페인 이름도 Light It up Blue로 같습니다. 사랑과 희망, 자폐성 장애의 상징이 ‘감사와 희망’의 상징으로 이어진 셈입니다.

올해 4월도 파랑이 주요 포털사이트 메인화면을 장식하고 주요 랜드마크가 푸른색 조명을 발하고, SNS는 #LightItupBlue, #LightItBlue가 뒤덮기를 기대합니다. 의료진과 돌봄 노동자, 장애인이 함께 있는 모습은 친숙하지만, 하나의 의미로 상징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세 주체가 COVID-19 위협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는 대상이라는 공통점도 있네요. 이번호 리포트 표지도 파랑으로 장식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이슈포착1>은 COVID-19의 대유행이 장애인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예방 및 완화하기 위한 각 국의 조치를 알아보고 아이디를 얻는 차원에서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서 발간한 문서를 번역해 소개합니다. 김윤범 연구원님이 번역을 해주셨습니다.

<이슈포착2>는 COVID-19 이후 장애인 고용과 노동환경 개선에 대한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이슈포착1 주제와 연장선에서 나사렛대학교 브리즈학부 김선규 교수님께서 기고해주셨습니다. 더불어 유엔개발계획에서 기업이 COVID-19 위기 속에서 고려해야 할 인권 이슈를 정리한 문서도 함께 소개합니다.

〈이슈포착3〉도 앞선 주제와 연장선에서 COVID-19가 가져 온 장애인보호 작업장의 변화를 현장의 경험과 소회를 바탕으로 염광현 안산밀알보호작업장 팀장님이 기고해주셨습니다. 이번 호 〈이슈포착〉은 COVID-19와 장애인 권리 주제를 줄기로 삼아 국가와 기업 등 이해관계자들의 역할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포커스1〉은 위기상황과 인도적 차원의 긴급사태에서의 장애인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권리협약 11조의 국내이행 상황을 COVID-19 이슈와 연계해 손영수 선임연구원이 기고해주셨습니다.

〈포커스2〉는 10대 주요 일간지를 대상으로 시행했던 언론모니터링과 10년 전 시행했던 방송 모니터링 사업을 통합해 진행하는 미디어 모니터링 사업을 한지윤 연구원님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영화감독 류미례님이 기고해주신 〈영화평〉에서는 중도장애인의 장애 수용 과정을 그린 ‘팽귤 블룸’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장애를 갖기 전의 자신에게 작별을 고하기까지 주인공 샘이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고 현재를 사랑하게 되는 과정은 특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감을 더합니다.

지난해 연말에 다시 시작된 COVID-19 대유행은 현재도 끝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3월에서 4월 중에 다시 대유행이 시작될 것이라는 우려 섞인 소식이 날아들고 있습니다. 어찌겠습니까. 모두가 조심할 수 밖에요.

2021년 3월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소장 **김홍구**

# COVID-19와 장애인의 권리 : 지침에 관하여



**COVID-19  
RESPONSE**



**UNITED NATIONS  
HUMAN RIGHTS**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 COVID-19와 장애인의 권리 : 지침에 관하여

번역 : 김윤범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연구원

출처 : COVID-19 AND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GUIDANCE,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2020. 4. 29

## 개요

COVID-19 전염병은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위협적이지만, COVID-19 대응과정에서 또 다른 사회적 태도·환경·제도적 장벽이 발생함에 따라 장애인들은 보다 취약한 상황에 처해있다. 많은 장애인들은 바이러스에 감염되기 쉽고 감염 시 더 심각한 증상을 경험하며, 사망률이 높다. 또한 생계 및 소득 지원과 온라인 교육에 참여하는 것, 폭력으로부터 보호받는 데 있어 차별과 어려운 진입장벽에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등, 장애인의 보건서비스 정보접근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그중에서도 장애인 재소자나 노숙자 등 적절한 주거가 없는 사람들과 같은 특정 장애인 집단은 훨씬 더 큰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

위와 같은 위협을 7가지로 분류하여 인식하는 것은, 장애인이 경험하는 불균형적 영향을 완화시킬 수 있는 보다 나은 대응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 지침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 장애인에게 미치는 전염병의 영향과 그들의 권리 인식
- 전 세계에서 시행 중인 몇 가지 우수사례 공유
- 국가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이 채택할 수 있는 주요 조치 파악
- 장애인을 포괄하는 권리기반의 COVID-19 대응 보장에 관한 심화 학습

## 1. COVID-19가 장애인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COVID-19는 전 인류에게 위협하다. 그중 장애인은 대유행 기간 동안 장애인 차별적 지침, 규제와 의료서비스로부터의 접근성 부재 등으로 인해 더

큰 위험에 놓여있다. 이러한 차별적 시스템은 장애인의 삶의 질과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의학적 편견을 드러낸다. 예를 들어, 장애인이 서비스를 받고자하면 "완치 가능성" 혹은 "기대수명"이 높은 경우에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완치 가능성과 기대수명이 낮은 장애인과 가족들은 치료를 포기해야 한다는 압박에 노출 되어있다.

### 우수사례

- 산마리노공화국 생명윤리위원회는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COVID-19 치료 지침을 개발했다.
- 미국 보건복지부 시민권 사무소는 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 삶의 질 평가, 판단에 따라 진료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은 게시물을 발행하여 당국이 장애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도록 하였다.
- 아랍에미리트(UAE)는 가정 내 장애인을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하기 위한 국가 프로그램을 시작했으며, 4월 중순 현재 장애인을 대상으로 650,000건의 COVID-19 검사를 실시했다.
- 필리핀 보건기관은 지역사회 취약계층에게 맞춤형 공공메시지를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캐나다는 장애 문제에 대하여 정부에 조언하기 위해 COVID-19 장애 자문단을 설립하였다.

### 국가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이 취할 수 있는 주요 조치

- 유증상 장애인에게 검사 우선순위를 보장
- COVID-19가 장애인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촉진
- 의료환경의 정보 및 이용, 보급을 보장하여 사각지대를 식별하고 제거
- 대유행 발생 시 장애인을 위한 의약품의 지속적인 공급과 접근을 보장
- 장애인에 대한 편견에 따른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보건인력 양성 및 의식증진 실시
- COVID-19 대응을 구축할 때 장애인 대표 조직과 협의하여 적극적 참여를 유도

## 2. 코로나19가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COVID-19는 정신병원, 사회돌봄기관(고아원, 주간돌봄센터, 재활센터)



및 노인들을 위한 기관에 불균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높은 감염률과 사망률을 이어지고 있다. 일부 예비 조사에서, 전체 COVID-19 사망자 중 요양원 거주 사망자가 42%에서 57%로 나타났다. 시설에 있는 장애인은 기본적인 건강 상태, 거주자와 직원 간의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의 어려움, 직원의 퇴사 등으로 인해 COVID-19에 감염될 위험이 증가한다. 기관에 거주하는 장애인도 방치, 구속, 고립, 폭력 등 인권침해 위험이 더 크다.

#### 우수사례

- 스위스, 스페인에서는 가능한 경우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시설에서 나와 가족과 함께 생활하도록 하였다.
- 캐나다에서는 제도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와 함께 우선검사지침을 수립하였다.

#### 국가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이 취할 수 있는 주요 조치

- 시설에서 나온 장애인에게 가족 또는 비공식 네트워크(이웃, 지자체)를 통한 지역사회 지원 및 공공 또는 민간 서비스 제공자의 기금 지원 서비스를 신속하게 보장
- 시설 내 과밀 해소, 주민간 거리두기 실시, 방문시간 변경, 보호장비 사용 의무화, 위생상태 개선 등을 통한 감염위험 완화, 검사 및 예방조치를 우선 추진
- 인력 및 재원을 포함한 시설의 자원을 일시적으로 늘려 예방조치를 시행
- 비상 시기에 착취·폭력 및 학대로부터의 자유, 비차별, 자유롭고 사전 정보에 입각한 동의권, 그리고 사법에 대한 접근을 포함한 시설 거주자의 권리를 지속적으로 존중
- 시설 폐쇄 및 지역사회 복귀를 위한 제도화 전략을 채택, 강화하고, 장애인 및 노인에 대한 지원 및 서비스를 강화하여 보다 나은 회복을 추구

### 3. 코로나19가 지역사회에 장애인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장애인은 COVID-19 대응 조치로 인해 지역사회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데 있어 특정한 장벽에 직면한다. 특히, 그들의 요구, 권리를 고려하지 않

는 제한사항은 그들의 자율성, 건강, 삶에 새로운 위협을 야기한다.

일상생활에서 사람에게 의존하는 많은 장애인들은 이동 제한과 거리두기로 인해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로 인해 음식, 물, 약과 같은 필수품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여 위협에 처하게 할 수 있다. 또한 목욕, 요리, 식사와 같은 일상 활동에도 제약이 발생한다.

COVID-19 조치에 대한 정보는 모든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형식과 수단(예: 수화 해석, 자막, 읽기 쉬운 형식 등)으로 체계적으로 전달되거나 전파되지 않고 있다.

또한 정신 장애인과 자폐성 장애인 등은 가정 내 엄격한 구금에 적응하기 힘들 수 있다. 세심한 관찰 하에 짧은 외출이 이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열쇠이다.

#### 우수사례

- 파라과이와 파나마는 장애인이 의료정보를 얻을 때 접근이 용이한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 아르헨티나에서 장애인 지원을 위한 이동에 대한 제한은 없다.
- 프랑스와, 영국은 엄격한 구금 규정을 완화하고, 세심한 관찰 하에 자폐성 장애인, 정신장애인의 외출을 허용하도록 하였다.

#### 국가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이 취할 수 있는 주요 조치

- 수화 해석, 문자 및 읽기 쉬운 형식을 비롯한 COVID-19 관련 조치에 대한 정보를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
- 장애인을 지원하는 조력자의 거주지 제한 예외 적용
- 지역사회 지원 네트워크 개발을 촉진 및 조정하고, 보호 소재, 장비와 제품 가용성 보장
- 구제 조치 시 슈퍼마켓, 식료품 및 기타 필수품점에서 장애인과 보호자에게 우선권을 주어 개방시간을 설정하는 것을 고려
- 거주지 이탈에 대한 전면적 금지과 과태료 부과를 제한하고 면제함으로써 장애인이 외부활동을 가능케 하는 등 장애인에 대한 합리적인 편의제공을 보장

#### 4. COVID-19가 장애인의 근로, 소득 및 생계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장애인은 다른 사람에 비해 취업할 가능성이 낮으며, 취업한 경우엔 비정규직일 가능성이 높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고용보험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 현재의 COVID-19 환경에서의 경제회복을 저해한다. 이는 장애인을 더욱 빠르게 빈곤층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 우수사례

- 불가리아, 몰타 및 리투아니아는 사회적 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고 장애인을 포함한 더 많은 수혜자를 지원하기 위해 사회 보호 시스템에 대한 기금을 증액했다.
- 아르헨티나와 페루에서 장애급여를 받는 사람들은 COVID-19 위기에 맞추어 추가 금액을 받게 될 것이다. 프랑스도 이와 유사한 장애인수당 수혜자 우대 조치를 발표했으며 튀니지의 비상대책에는 저소득 가구, 장애인, 노숙인 등을 위한 현금 지급이 포함돼 있다.
- 미국은 장애인의 재정상황 악화 완화를 위한 세금 경감 프로그램을 수립했다.

##### 국가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이 취할 수 있는 주요 조치

- 무소득 장애인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제공
- 추가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지급을 통한 기존 장애급여를 증액
- 만료기간이 가까운 장애인의 권리 사용 기한을 자동으로 연장
- 소득이 감소된 장애인 자영업자에게 금전적 보상을 제공
- 재택근무에 필요한 장비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 고용주에게 세금공제를 포함한 재정적 지원
- 식품공급계획에는 장애인이 포함되며, 가정에서 식품을 배달하기 위한 물류대책을 포함하여 그 요구에 부응

#### 5. COVID-19가 장애인의 교육권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COVID-19로 인해, 대부분 장애를 가진 학생들을 포함한 모든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교육 기관을 일시적으로 폐쇄하였다. 교육 중단에 영향을 줄이기 위해 일부 국가에서는 원격 학습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장애 학생들은 필수 장비의 부재, 인터넷 접속, 접근 가능한 자료 및 온라인 학교 프

로그그램을 따를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지원에 접근이 제한되고 있다. 그 결과 온라인 수업에서 많은 장애학생들, 특히 지적장애학생들이 뒤쳐지고 있다

### 우수사례

- 미국은 연방법령인 장애인법의 적용을 받는 개인에 관한 지침 문서를 발행하였다.
- 에콰도르가 가정 내 고립된 채로 남아 있어야 하는 아동의 교육을 지원하는 교사(돌봄교사)들을 위한 권고안을 발표했다.
- 영국은 부모와 돌봄 제공자가 가정에서의 서로다른 책임을 직면하는 방법과 장애 아동의 교육 과정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정보를 보급하고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 국가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이 취할 수 있는 주요 조치

- 학교 밖에서의 교육 제공 시 교육 및 학교 당국에 의무 범위와 이용 가능한 자원의 다양성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제공
- 원격 학습을 위한 인터넷 접속을 보장하고 보조 기기 및 합리적인 편의를 포함하여 장애인이 소프트웨어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보장
- 원격 학습을 통한 포괄적 교육에 대한 교사 지도, 교육 및 지원을 제공
- 장애아동 부모 및 보호자와 긴밀한 협조를 통한 조기교육 시스템 구축
- 부모와 돌봄 제공자가 장비 설치 및 장애아동 교육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지침 제공과 원격 지원
- 원격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 학생을 위한 접근성 및 적응성 있는 자료 개발
-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전파할 수 있는 접근 가능한 교육 시청각 자료 개발

## 6. COVID-19가 장애인의 폭력 보호 권리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장애인들은 고립되었을 때 더욱 폭력에 노출될 위험이 높다. 장애를 가진 여성들은 친구, 가정과 같은 친밀한 사람에게 폭력과 성범죄에 더 많이 노출되어있다. 또한 같은 장애를 가진 남성들보다도 높은 수준의 폭력을 경험할 것이라는 점을 예측할 수 있다. COVID-19상황에서의 장애 및 성별에 기반한 통계정보는 없지만, 유사상황에서의 자료들은 대체로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보

다 장애인 중에서는 여성이 더 높은 위험에 처해 있음을 보여준다.

가정폭력 지원에 대한 서비스 내용이나 접근방법은 장애인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지 못하여, 대체로 지원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상담전화는 청각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통역 서비스를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고, 장애인의 요구에 맞는 응급대피소 안내 및 서비스가 준비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 우수사례

- 페루에서는 위기상황에 지자체가 장애인에게 전화로 직접 서비스하는 지침이 생김으로 인해, 위기 시에 지자체에서 직접 폭력 상황을 신고하고 상황에 맞게 대처하도록 하였다.
- 몇몇 국가들은 청각장애인을 위한 문자, 중계, 비디오 전화 서비스를 포함하여 접근 가능한 상담전화, 지원 및 보고를 계속 제공하고 있다.

#### 국가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이 취할 수 있는 주요 조치

- 신고 메커니즘, 상담전화, 긴급 대피소 및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
- 지역사회 및 자발적 네트워크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장애인, 특히 고립된 생활을 하는 장애인의 상황 모니터링을 수행
- 장애인, 특히 여성장애인이 직면한 폭력 위험에 대한 인식교육 실시, 동료 지원 육성을 포함한 지원 네트워크 활성화

## 7. 장애인이 많은 특정 인구 집단(장애인 재소자와 적절한 주거가 없는 장애인)에 대한 COVID-19의 영향은 무엇인가?

### a. 장애인 재소자들

교도소에는 많은 장애인이 수용되어있고, 특히 교도소 내 정신장애인과 지적장애인이 높은 위험에 노출되어있다. 혼잡하고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감염 위험이 높아진다. 장애를 가진 대부분의 재소자들은 식사와 목욕에 있어서 동료들이나 교도소 보건 서비스의 도움에 의존하는데, 거리두기로 인하여 일반적으로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어렵다.

### 우수사례

- 영국, 미국 등 일부 나라에서는 2개월 이하로 복역한 죄수, 소년범과 장애인 재소자들을 가석방 시키거나 석방 절차를 밟는 지침을 발표하였다.

### 국가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이 취할 수 있는 주요 조치

- 조기 석방 및 보호관찰 또는 감형, 감형 선고, 미결구금 축소 등을 통해 장애인을 포함한 감염위험군 재소자를 석방함으로써 교도소 인구를 줄이고, 가족 및/또는 비공식 네트워크, 공공 또는 민간 서비스 제공자에 의한 자금 지원 서비스를 통해 지역사회 지원 제공을 신속하게 보장
- 교도소 내 장애인 재소자 식별 및 지원, 식품과 물의 위생 보장, 격리조치, 보호장비 사용, 위생상태 개선과 같이 감염 위험을 줄이기 위한 예방조치 시행

#### b. 주거지가 불분명한 장애인들

지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은 가난한 인구 중 대표적인 인구이다. 장애인과 긴급 대피소 및 비공식 거주지에 거주하는 노숙자는 과밀 생활환경, 위생적인 물에 대한 접근성 부족, 그리고 기존의 좋지 않은 건강 상태 때문에 COVID-19에 특히 취약하다.

COVID-19 비상사태로 장애인을 포함한 노숙자들은 피난처에 몰려와 지원을 받게되었고, 긴급 대피소의 과밀화는 바이러스를 확산시켰다. 생활 형편상 물리적 거리두기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 또한 감염위험군에 있다.

### 우수사례

- 칠레 정부는 노숙자들에게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상시설강화 계획을 발표했다.
- 아르헨티나에서는 높은 의료비 부담 없이 사회적 거리를 필요로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응급 피난처를 제공하기 위해 대형 시설에 1,000개 이상의 침대를 설치하였다.

### 국가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이 취할 수 있는 주요 조치

- 장애인이 존엄성을 가진 인격체로 대우받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상담원과 같은 1차 대응자에게 폭력 상황을 피할 수 있는 소통에 대한 교육 제공
- 바이러스 확산을 가속화할 수 있으므로 비공식 정착지로의 강제 이동을 피한다. 장애인을 거주지에서 치료하고 가능한 경우 안전하게 접근 가능한 피난처를 제공
- 적절한 위생 및 적절한 생활 조건을 갖춘 임대 부동산, 호텔, 회의 센터 및 경기장 등 다양한 대피소 형태 고려
- 물, 비누, 싱크대, 기타 자원 등 거리에 대한 위생서비스를 제공하여 위생적인 물 공급이 가능하도록 조치

# 포스트 코로나시대의 장애인 고용, 개선방안





# 포스트 코로나시대의 장애인 고용, 개선방안

김선규 나사렛대학교 브리즈학부 교수

우리나라에 코로나 19가 발생한 이후 사회는 코로나19 이전과는 전혀 다른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많은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사람끼리 만나는 것은 아주 큰 위험으로 인식되고 있고 비대면 상황에서 표현되는 생소한 생활방식이 당연한 듯 자리 잡고 있다. 정치, 문화, 경제, 체육 등의 분야에서도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장애인의 고용과 노동환경은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앞으로의 어려움도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이에 따른 적절한 개선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사회, 문화, 여가 활동들이 제한이 되고 코로나 블루라는 심리적 문제도 깊어지는데 특히 장애인의 경우 각종 시설과 학교의 프로그램들이 제한이 되어 심리적, 정서적으로 더 많이 위축되어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코로나19 시대의 장애인의 고용과 노동환경**은 어떻게?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충격이 저소득층에 집중되면서 상, 하위 계층 간 소득격차가 더 벌어졌고 특히 장애인인에게 있어서 이 분야는 가장 차별이 많고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어, 소득 격차는 물론이고 생존의 위협까지 받는 현실이 되었다. 장애인의 노동유형도 대부분 법적 보장이 미약한 비정규직, 저임금에 종사하는 것이고 비장애인에 비해 아주 미약한 형태의 일자리라서 코로나19의 충격에 너무 많은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필자도 대학에서 발달장애인 대학생의 진로지도를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거의 90% 이상의 취업률을 달성했다. 하지만 팬데믹 상황인 금년에 졸업하는 제자들의 경우 취업률이 6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이고 장애인의 고용과 노동환경에는 큰 위기의 시기라고 생각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필요한 정책**은 어떤 것이 있을까?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을 총괄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코로나 19 시대의 어려운 장애인 노동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정책을 내었다.

**훈련기관**은 개학을 연기하거나 휴교 및 휴원 조치를 하고 전화, 영상통화 등을 이용하여 비대면 훈련과 재택훈련으로 전환하였다. 모든 프로그램은 온라인으로 실시하였다.

**기업주에 대한 피해지원**으로는 고용부담금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체납처분을 유예하고,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분기 지급에서 월 지급으로 바꾸고, 장애인 근로자가 자가 격리할 경우 근로지원인 근무를 인정하고 공단 용자지원 상환을 연도 말까지 늦추어 준다고 했다.

또한 **직업능력개발, 근로지원인** 등 공단 사업 참여자에게는 마스크 및 손세정제 등을 별도로 지원하여 안전을 기했다. 훈련기관의 일부는 재택훈련 운영체제로 전환하였다. 민간위탁 훈련 중단에 따른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학 연기, 휴교, 휴업에 따른 미지급 수당은 일괄 지급하고 재택훈련을 하는 경우에도 훈련비 및 훈련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근로지원인 휴무 시 경제적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장애인 근로자가 자가 격리한 경우 최대 14일 범위 내에서 근로지원인 근무를 인정하였다. 공단의 코로나19 대책을 살펴보면 세부 사업별로 사업지침을 수정·보완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최소화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런 정책이 공단 나름의 필요한 조치라고 보지만 위에 나타난 내용만으로 현실적으로 나타난 장애인의 고용의 위협에 적절하고 피부에 와닿는 정책으로는 좀 미흡한 것이라 생각된다.

다음은 **한국장애인 자립 생활센터 총 연합회**에서 발간한 “코로나 19이후 자립생활센터 고용 및 근로자 현황 실태조사(2020.1)에 보면 근무환경의 변화, 노동환경의 변화에 따른 문제점, 근로 및 노동환경 개선에 대한 제안들이 담겨져 있어 장애인의 입장에서 본 보다 현실적인 입장을 나타내어서 그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한다.

먼저 **코로나19 이후 근무환경 변화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재택근무 시에 온라인 업무시스템 미구축, 개별 업무 환경 구축에 따른 제약, 장애 청각, 시각장애인의 편의시설 및 업무 지원 프로그램 부재, 활동지원 및 근로지원인 서비스 등이 부정 수급의 오해 등으로 **업무 능력의 하락**이 되었다.

고용기관의 휴업, 폐업에 따른 실직,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인한 임금 삭감, 계약직, 단기근로자의 계약 연장 불투명으로 인한 **고용 불안정 현상**이 나타났다. 방역에 따른 업무 환경개선의 비용발생, 온라인 업무 시스템 구축 및 프로그램 사용에 따른 비용발생, 휴직에 따른 인건비 및 휴직수당 발생으로 **비용 증가**가 있었다.

이런 문제는 이 기관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장애인 근로자의 공통적인 문제점이라 소수의 케이스이지만 아주 시의 적절한 문제점 확인이며 이런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향후 장애인의 안정적인 노동환경을 구축하는데 큰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다음으로 **코로나19 이후 근로 및 노동환경 개선제안** 내용으로 **온라인 시스템 구축**인데 정부의 통합 온라인 시스템 구축 또는 시스템 구축 지원, 화상 회의나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환경 제공, 온라인 시스템 및 프로그램 사용 교육 제공이 있고 근무환경조성으로는 장애 유형별 업무 편의시설 및 장비, 프로그램 제공, 사무실 및 재택 근무지의 방역시스템 구축 및 지원이 있고 **고용안정 확보**로는 시간제 및 계약직 근로자 휴업에 따른 인건비 지원, 사업체 휴업 및 폐업, 업무 통폐합 등이 발생 시에 고용 승계로 인한 불안정한 상황 때문에, IL센터 등 중증장애인 고용기관의 고용장려금 지원을 넘어 운영지원 등 제반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면 **코로나 19 위기에 따른 주요 나라의 장애인 고용대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장애인 고용과 노동환경 개성을 위한 국제 컨퍼런스 자료집. 한국장애인연맹. 20.11)

- **싱가포르**는 사회복지 기관은 운영 정지를 한 후 재교육 및 훈련실시, 장애인 재취업을 위한 정보 제공, 교육비 보조금과 훈련 수당 지급, 기업들이 현지 근로자들 직업을 유지하도록 돕기 위해 임금 보조한 한다.
- **인도네시아**는 실직자 지원 및 실직 예방 정책으로 연후 또는 인턴십 기간 동안 숙박비와 교통비를 지급한다
- **태국**은 비정규직 근로자 재정 지원, 등록 농가 재정 지원, 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사회보험 지원, 공무원 지원(급여 포함) - 장애인 172명 대상
- **필리핀**은 정리해고 가능성을 인해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예상되는 근로자에 대해 실업보험금을 지원하고,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민간 사업장의 근로자 1인당 현금을 지원한다.
- **베트남**은 정부의 지원이 비공식 부문에서 일하는 장애인을 포함하도록 보장하고, 온라인 일자리, 접근 가능한 어플리케이션, 디지털 플랫폼 제공을 통해 장애인의 금융 보완 및 교육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고 있다.

이상으로 코로나19 시대에 고용과 노동환경에 위협에 빠진 장애인들을 위한 우리나라와 각국의 정책들을 살펴보았다.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이 정책들이 씩마음에 들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장애인 자립생활 총연합회의 정책 제안이 장애인의 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제안들이 있어 이 제안들을 발전시켜 나가면 좋은 결과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경제적 위기나 전염병이 유행할 때 가장 직접적이고 치명적인 피해를 받는 것은 장애인이다. 이런 위기의 시기에 장애인 관련 기관들과 장애인 당사자 단체가 모여 장애인의 고용과 노동환경의 변화에 대한 특별 협의체 만들어 장애인의 고용과 노동환경의 변화를 준비해야 한다. 하지만 기관마다 생각과 방법이 제각각이라 답답한 마음이다. 위기가 곧 기회라는 말이 있듯이 코로나19를 기회로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장애인 고용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장애인 당사자 단체에서 보다 적극적인 행동과 대안을 내어서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들을 설득하고 문제 해결의 파트너로 삼아야 한다.

코로나19 이후의 장애인 복지, 문화, 예술, 체육, 교육, 고용을 위한 제안들이 홍수처럼 쏟아지고 제도화되어서 장애인의 삶이 보다 든든하게 자립하는 모습을 보고싶다.



# 모두가 편리한 웹·모바일 세상을 꿈꾸는 IT 사회적기업 웹와치

웹와치(주)는 모두가 편리한 웹·모바일 세상을 꿈꾸는 IT분야 최초의 사회적기업으로서, 웹사이트의 장애인 접근성을 심사 평가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정 웹 접근성 품질인증기관입니다.

웹와치(주)는 웹 접근성 진단 방법과 지표, 평가와 자동평가 보고서 등을 꾸준히 개발해왔으며, 웹 접근성 자동진단 도구인 Watch 1.0을 개발하여 프로그램 등록하고, 웹 접근성 상시 모니터링 서비스인 WMS를 특허등록 하였으며, 모바일 접근성 원격 진단 솔루션 MAARES를 개발하여 특허출원 하는 등 접근성 분야 기술선도기업으로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 웹와치 주요 사업

###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국가 공인 웹 접근성 품질인증기관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2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3에 의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정한 웹 접근성 품질인증기관이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를 보장한 웹사이트에 대해 인증하고 마크를 부여하는 제도.



### MA진단·컨설팅 / 품질인증 Mobile App Accessibility

장애인,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개선을 위한 진단·컨설팅과 품질인증

- \* MA 품질인증 대상 : Google Android OS 기반 애플리케이션
- Apple IOS 기반 애플리케이션



### SA진단·컨설팅 / 품질인증 Software & Solution Accessibility

응용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솔루션의 장애인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진단·컨설팅 및 품질인증

- \* SA 품질인증 대상 : Microsoft Windows OS 기반 소프트웨어
- 사용자 에이전트 소프트웨어 / 접근성 지원 소프트웨어
- 웹 브라우저와 연동되는 RIA 소프트웨어 모듈 및 소프트웨어 솔루션



T. (02)2678-0078

E-mail. webwatch@webwatch.or.kr



**HUMAN RIGHTS  
DUE DILIGENCE  
AND COVID-19:  
A RAPID SELF-ASSESSMENT  
FOR BUSINESS**



# 속성 자가진단

번역 : 김윤범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연구원

출처 : HUMAN RIGHTS DUE DILIGENCE AND COVID-19: A RAPID SELF-ASSESSMENT, 유엔개발계획, 2020

## 속성 자가진단 개요

COVID-19의 전세계 확산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 충격은 극심한 불평등과 생태학적 취약성의 시기에 발생한다. 대유행은 특히 취약하고 소외된 집단에 타격을 주고 있는데, 건강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거나, 의료 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생활필수품에 대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자원이 줄어들고 있다. 기업, 정부 및 시민 사회가 시기적절하고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해 함께 모이지 않는 한, COVID-19 대유행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의제와 지속가능발전목표를 향한 진전의 많은 부분을 상쇄할 수 있다.

기업들은 전례 없는 규모의 파산에 직면해 있으며, 이로 인해 수백만 명의 실직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세계경제의 내구성, 나아가 이를 뒷받침하는 규범과 제도에 대한 신뢰는 그 어느 때보다 시험받고 있다. 기업, 특히 운영을 지속하기 위해 국가 지원을 받는 기업들이 위기에 어떻게 대응하는지는 향후 몇 년 동안 민간 부문에 대한 대중의 태도를 형성할 것이다.

실제로 많은 기업은 의료 공급에 기여하고 근로자 복지를 실행하며 영향을 받고 있는 지역사회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면서 COVID-19로 인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일부 제조사들은 공급 부족 상태에 있는 구멍 마스크와 인공호흡기를 생산하기 위해 생산시스템을 전환하고 있다. 이들 기업은 충분한 찬사를 받아야 마땅하며, 실제로 이 자가진단은 기업의 실제 기여와 행동에서 부분적으로 영감을 받았다. 그러나, 선도기업들은 또한 그들이 공공재에 대한 공헌을 넘어서서 그들의 경영의 최근 변화가 사회와 환경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다루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들 기업은 특히 가혹한 경제 상황 속에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핵심 가치에 대한 강한 성찰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 이들은 위기가 지나간 후에도 고객, 소비자, 직원, 주주 및 지역사회에 대한 신뢰 유지에 있어 인권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방지, 완화 및 해결하는 것이 핵심임을 알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유엔개발계획(UNDP)은 기업이 운영과정에서의 인권 영향을 고려하고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간단하고 접근 가능한 도구인 <인권실사와 COVID-19: 기업을 위한 신속 자가진단>을 설계했다. 이 비전면적인 잠재적 조치 목록은 많은 사업에 공통적인 인권 리스크와 영향에 대한 신속하고 지속적인 반응을 가능하게 한다. 중요한 것은, 이 자가진단이 유엔 기업과 인권에 관한 이행지침(UNGP)에 요약되어 있는 포괄적인 인권 실사 도구로 오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대신, COVID-19의 특정 맥락에서 인권 조치에 대한 부분적이지만 유익한 시각으로 기업에 제공된다. 열거된 조치는 UN 인권조약,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및 UNGP의 관련 조항에 기초한다. COVID-19 위기 기간의 준비, 대응 그리고 복구 3단계를 따라 주요 조치 또는 고려사항을 제시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UNDP는 모든 기업이 이 지침을 넘어 기업운영 및 공급사슬에서 인권에 미치는 Covid-19의 즉각적이고 장기적인 영향에 대응하여 완전한 인권 영향 평가를 고려할 것을 권고한다. 이러한 조치 중 일부는 규모가 작은 기업보다 큰 기업에게 더 실현 가능성이 높을 수 있지만, 모든 규모의 기업은 UNGP에 따른 인권을 존중할 책임이 있다. 인권 정책이 없는 기업의 경우, 부정적 인권영향을 예방, 완화 및 해결하기 위한 서면으로 된 공공 기여 약속의 실현 가능성을 탐구하는 적절한 시간이 될 수 있다.

이 진단평가는 부분적으로 UNDP의 글로벌 COVID-19 통합 대응 주문으로 통지된다. '준비·대응·복구' 프레임워크를 통해 UNDP는 필수 건강제품의 조달·공급 지원, 위기관리·대응 역량 강화, 전 세계 주요 사회·경제적 영향 해소 등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 도구는 유럽연합과 스웨덴의 기금을 받아 수행 중인 프로젝트와 합작으로 아시아 기업과 인권(B+HR Asia) 프로그램이 제공한다.

## 속성 자가진단 도구

안전 보건			
조치	단계		
	Prepare 준비	Respond 대응	Recover 회복
1. 효율적인 코로나 응급 대응책을 설계, 테스트, 시행			
2. 차별 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마스크를 지급하고, 의약품품을 지급.			



3. 정기적으로 작업장, 공공장소, 화장실, 기숙사, 카페 등을 소독/방제			
4. 모든 이에게 청결한 화장실 시설, 비누, 음료, 식품저장 위생시설을 제공			
5. 안전보건 표준에 부합하는 안전보건장비를 제공(ex. 마스크, 병원, 클리닉 내 보호장비 등)			
6. 여성을 위한 보호장비, 위생제품, 젠더 민감시설에 접근하는 것을 보장			
7. 코로나에 노출될 위험이 높고, 안전하지 않은 위험한 작업환경에 노출되는 것에 대한 방지(특히, 노인, 임산부, 기저질환자)			
8. 산모, 임산부들에게 코로나 감염에 노출될 수 있는 리스크를 제거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 리스크 평가 및 이니셔티브 실시			
9. 노동자들이 고향의 가족이나 친구들과 연락할 수 있고, 모든 노동자를 지원 네트워크에 포함			
10. 젊은 노동자나 다른 이들이 코로나에 감염될 가능성에 노출된 위험한 작업환경에 사전 동의 없이 배치되는 것을 금지			
11. 재약회사의 약과 의료장비회사의 의료장비에 대한 취약계층의 접근 가능성 보장			
12. 회사에 의해 제공되는 작업장과 기숙사설비 내에서의 사회적 거리 두기 보장			
13. 코로나 기간 안전보건위원회에 의한 권유를 포함해서, 노동자들에게 리스크를 줄이거나 완화하기 위한 모든 합리적인 방안을 수행			
14. 계약직, 단기간 노동자, 특수고용직 포함 모든 노동자에게 코로나 관련 산업안전보건정책과 관행을 정기적으로 인식시키고 교육 제공			

노동권			
조치	단계		
	Prepare 준비	Respond 대응	Recover 회복
1. 노동자 해고회피 계획을 수립하고, 해고가 불가피한 경우 보상 제공과 절차를 준수(특히 일용직의 경우)			
2. 코로나 이후에도 지역/국제 노동기준과 정부의 경기부양책과 연계할 수 있으면 그에 따라 근로계약에 따른 시간의 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지급			
3. 기업들이 다시 사업을 확장할 때는 코로나 기간동안 해고된 노동자 재고용을 고려하고, 신규직원을 고용할 때는 차별 금지			
4. 실업이나 병가기간에 코로나에 감염된 것으로 판명된 노동자를 채용시 감염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			
5.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코로나 동안 혹은 영업 축소 및 중지 기간에도 필요하다면 감액된 급여를 지급			

6. 자가격리기간을 포함해서, 노동자들이 아프고, 일하러 갈 수 없을 기간에도 임금을 지급			
7. 노동자를 부채에 얽매이게 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코로나와 관련 질병 치료 비용을 노동자의 인지나 동의 없이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을 금지			
8. 코로나 또는 관련 질병 검사 및 치료를 이유로 급여공제 금지			
9. 여성에게 코로나 기간이나 혹은 이후에 동일직무에 대한 동일임금 지급			
10. 여성이 통상 가정에서 무급으로 돌봄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생산을 늘릴 때 유연근무 및 파트타임 근무에 대한 그들의 요구를 수용			
11. 사회적 거리두기 규정을 준수하고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자녀가 있는 부모나 다른 노동자들의 재택근무 유연성 보장			
12. 코로나로 인해 건강한 성인 노동자 수의 감소 및 부채로 인한 겹을 메우기 위한 아동노동 금지			
13. 코로나로 인해 고통을 겪는 장애인들에게 취업, 재취업을 보장하기 위한 특별한 고려			
14. 노동자 신분증, 여권이나 기타 문서 보관 금지. 노동자들에게 국가법이나, 공중보건/응급조치에 따라 허용된 직원의 귀가 허용			

**환경 및 지역사회 영향**

조치	단계		
	Prepare 준비	Respond 대응	Recover 회복
1. 사업활동으로 인해 소비자나 일반 대중의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사전예방 조치			
2. 필요한 사전예방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업활동으로 인해 잠재되어 있는 코로나 리스크 관련 정보를 소비자 및 대중들에게 제공			
3. 마스크, 개인보호장구, 장갑에서 독성물질, 유해물질 배출이 나오는지 모든 환경기준이 지켜졌는지 확인하고, 코로나 위기 때에도 부적절하게 처리된 것들이 남아있는지 노동자들과 소통			
4. 코로나 위기 이후 정리해고로 인한 지역사회 영향을 측정하고 필요에 따라 완화 또는 개선조치 수행			
5. 코로나 위기 기간 동안 지역사회의 재산권 및 지식재산권 침해 방지			

**사생활 보호**

조치	단계		
	Prepare 준비	Respond 대응	Recover 회복
1. 코로나 전염병에 대응할 목적과 관련 법률체계에 의해서만 통신이나 의료 기관을 통해 소비자 또는 일반인의 개인 정보를 정부에 공개하되 공개된 정보는 범위와 기간을 최소화			

2. 코로나에 감염된 것으로 밝혀진 근로자의 이름과 연락처 정보는 노동자의 동의나 정부에 의한 법적요청 없이는 일반 대중 또는 임직원들에게 공개 금지			
3. 코로나 검사과정에 관련된 민간 보안 직원들에게 인권존중 교육을 제공하거나 환기			

낙인 및 차별금지			
조치	단계		
	Prepare 준비	Respond 대응	Recover 회복
1. 종업원이 작업장 복귀가 허용된 경우, 차별적 조치나 낙인찍히는 일이 없도록 보장			
2. 회사 내 소외계층에 대한 두려움과 편견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잘못된 정보확산을 막기 위한 절차를 수립			
3. 회사 내 잘못된 정보, 증오 및 편견, 확산을 막기 위해 소셜미디어의 책임있는 사용에 대한 인식 제공			
4. 소외된 그룹에 대한 고정관념, 잘못된 정보 또는 낙인의 축진을 방지하기 위해 소수자, 이주자 또는 기타 취약 집단이 광고, 마케팅 캠페인 또는 기업 커뮤니케이션에서 COVID-19에 부정적으로 연계되지 않도록 보장			

기업정책과 운영 고려사항			
조치	단계		
	Prepare 준비	Respond 대응	Recover 회복
1. 기업 웹 사이트 또는 커뮤니케이션 자료에서 인권을 존중한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표명			
2. 인권정책을 입안하고 인권정책 이행약속이 대내외 이해관계자들에게 전달			
3. COVID-19와 관련된 기업 의사 결정 및 정보에 대해 직원들에게 정기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하고 투명성을 제고			
4. 코로나로 인해 야기되는 인권침해에 대해 효과적인 고충처리 매커니즘을 통해 즉각적이고 적절한 보상을 제공			
5. 접근가능한 고충처리 매커니즘을 구축하고 핫라인과 같은 기준에 접근 가능한 고충처리 매커니즘을 보장하고, 코로나로 인해 야기되는 보고 이슈들은 모든 종업원과 소비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			
6. 적절한 정부 부양정책에 따라 코로나 기간 동안 생계유지를 위해 중소기업도 공급업체 및 소매업체에 적시에 대금을 지급하거나 신용을 연장			
7. 가능한 공급업체, 특히 중소기업과 계약을 유지			
8. 공급사슬에 있는 모든 신규 공급업체들에 대해 인권실사를 진행			

# 장애인보호작업장의 코로나19 전/후의 변화

염광현 안산밀알보호작업장 사무국장

직업이란 사람이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인 요건이 된다. 즉 생계유지 수단이나 생활의 방편을 마련하고 사회의 일원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나아가서는 자아실현의 수단이 된다.

보호작업장은 기본적으로 장애인에게 이러한 직업에 대해 경험과 사회적 관계를 제공해 주는 시설이다. 조금 더 서술하자면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직업적응능력 및 직무기능 향상훈련 등 직업재활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보호가 가능한 조건에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며, 이에 상응하는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여, 장애인 근로사업장이나 그 밖의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시설이다.

글쓰기에 앞서 필자가 근무하고 있는 안산밀알보호작업장에 대해 몇 가지 언급하자면 우선 장애인분야에서 대·내외적으로 잘 알려진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 산하에 있는 시설 48개 중 하나이다. 2010년 2월에 개소하여 현재 종사자 10명과 이용자 3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성인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훈련반, 근로반, 그룹홈을 운영하고 있다. 수익사업으로는 무한인크프린터 임대사업과 임가공 사업을 하고 있다.

타 유사 보호작업장과는 다른 특징을 꼽자면 자체적으로 그룹홈을 운영하고 있는 점과, 무한인크프린터임대사업을 들 수 있다. 특히 2012년에 시작한 무한인크프린터 임대사업은 무한인크프린터를 구매하여 공급기를 단 후 임대하여 월 사용료를 받는 형식의 프린터사업으로 이 사업을 통해 전국 최초로 프린터 유지관리 서비스 항목에서 중증장애인 생산품인증을 받기도 하였다.

이외에도 시설이 속해 있는 안산시는 대체로 장애인분야에 대한 지원의 폭이 넓고 관심도가 높은 지자체이기 때문에 원활한 소통이 가능하였고, 지역 내

유관기관 및 복지시설들과의 네트워크도 비교적 잘 형성되어 있어 전반적인 시설 운영에 별 다른 어려움이 없었다.

하지만 작년 한해 코로나로 인해 이러한 운영에 차질이 생겼고, 개인적으로는 경황이 없었다. 알다시피 장애인보호작업장은 시설마다 조금의 차이는 있으나 사회복지시설의 특성과 수익을 창출해야하는 기업의 역할을 동시에 갖고 있다. 이러한 역할과 더불어 코로나로 인해 구체적으로 이용자의 돌봄에도 신경 써야 했고, 경기침체에 따른 매출 감소 역시 압박으로 다가왔다.

이러한 상황속에 짧지만 하나씩 그간의 상황들을 되짚어보자면,

우선 시설운영 측면에서는 작년 8월, 12월 사회적거리두기 지침 2단계, 2.5 단계 일 때는 모든 내부, 외부 행사들은 취소되었고, 이용자 정원대비 50%내 근무(17명)하였다. 종사자 1/3은 운영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재택근무를 순환적으로 실시하였다. 또한 별도로 이용자가 대중교통이용이 불가함에 따라 출·퇴근 송영서비스를 시작하였다. 추가적으로 이용자의 긴급돌봄을 운영해야 했으나 신청자가 없어 따로 진행하지는 않았다.

사업측면에서는 임가공사업의 생산을 담당하며 협력관계를 맺어오던 업체 중 1/4이 코로나 여파로 인해 문을 닫게 되었다. 이로 인해 생산물량도 대폭 축소되어 임가공 매출은 전년대비 절반 이상이나 감소되었다. 이러한 생산물량 감소는 판매를 담당하고 있는 업체에게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주게 되어 기존의 협력관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워진다. 이미 코로나로 인해 이용자의 50%가 일터에 나오지 않는 상황에 종사자들은 업체 간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휴관기간에도 밤늦도록 임가공 작업을 하여 생산량을 맞출 수밖에 없었다. 어려움은 있었으나 현재는 생산담당 4개 업체를 비롯하여 전반적으로 원활히 업체관리가 진행 중이다.

반면에 주력 사업인 무한잉크프린터 임대사업은 서비스유지관리로 장애인 중증생산품 인증을 받아 사업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고정매출로 이어져 타격 없이 유지 가능하였다. 오히려 코로나로 인해 오히려 A/S건 및 감소하는 등의 나름의 수혜가 있기도 하였다. 또한 작년 한해 특별히 코로나로 인한 지자

체(안산시)의 취약시설 지원에 대한 추경이 이루어져 해당연도 3월부터 12월 10일 기준으로 근로장애인 급여를 보존해 주어 근로자 입장에서 가장 피해를 볼 수 있었던 임금부분에서 장애인 근로자의 피해를 최소화하였다.(유급휴일 제외) 이 부분에 있어서 안산시의 선도적이며 빈틈없는 복지를 실천하려는 노력에 감사를 표하게 된다.

맺으며,

보호작업장의 종사자는 장애인의 고용과 자립을 지원한다는 책무 때문이라도 이용자와의 친밀 관계를 쉽게 보지 않는다. 같은 곳을 바라보고 공동의 목표를 가진 동지애가 있기 때문이다. 작년 8월 한때 코로나로 인해 전국 장애인 사업장 691곳 중, 휴업을 한 시설은 462곳에 이를 때도 있었다고 한다. 정부나 지자체의 휴관 지침도 있었겠지만 앞서 언급한 바, 장애인 근로자는 질병 감염에 취약하다는 이유로 일터에 나오지 못하고, 장애인 근로자 없이 돌아가려니 종사자는 상당한 과업이 있었을 것이고, 임금은 제대로 지급이 되지 않았을 것 등의 문제들로 쉽게 짐작된다.

‘생산하며 나누고 서로 상생하며 성장을 한다.’ 안산밀알보호작업장의 활동 목표이자 가치이지만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현재의 모든 장애인 시설에 공유되어야 할 공동의 목표이자 가치이지 않을까 싶다.

2021년

##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사업

1. CRPD 국내이행 모니터링

2. 국회 의정활동 모니터링

3. 장애인정책 예산 모니터링

4. 법률 및 자치법규 모니터링

5. 장애인 관광환경 모니터링

6. 미디어 모니터링

7. 정보제공 및 인식개선

# 코로나 19와 CRPD

## – 제11조(위기상황과 인도적 차원의 긴급사태)를 중심으로

손영수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선임연구원

최근 보도에 따르면 전체 코로나19 확진자 중 장애인 환자는 약 4%에 불과하나 전체 코로나19 사망자 중 21% 이상은 장애인이며, 장애인 사망률은 확진자 1562명 대비 사망자 117명으로 7.49%로 분석됐다. 이는 비장애인의 사망률이 확진자 3만7870명 대비 사망자 439명으로 1.15%인 것을 고려하면 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6.5배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sup>1)</sup>

작년 2월 청도대남병원에서 첫 장애인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약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코로나19로 인한 장애인의 피해사례는 긴 기간만큼이나 많으며 각각의 상황들을 살펴보면 처절하고 암담하다.

### 사 례

"코로나19 음성 판정이 나왔고, 11일간의 완벽한 고립이 끝났다. 온 몸이 마비됐고, 왼팔 하나만 겨우 움직일 수 있는 나는 활동지원사의 도움 없이 처음으로 2주를 보냈다. 처음 보낸 2주, 내가 중증장애인을 다시 증명해야 하는 시험 같았다. 나는 버려지듯 혼자가 돼야만 했다. 왼팔에만 의지한 채 온 집안을 기어 다녔다. 일상생활 자체가 불가능했다. 배가 고파서 보급품으로 받은 박스를 열어 보았다. 들어 있는 건 생쌀과 배추, 그 외 라면과 부식들... 몸에 물만 적시는 샤워, 쌓여만 가는 쓰레기, 악취... 11일간의 자가격리는 지옥이었다."<sup>2)</sup>

해당 사례는 비록 코로나19의 초기의 상황이지만 정부의 방역정책으로 인해 자가격리를 해야하는 장애인의 경험담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우수한 방역정책으로 칭송받고 있지만 사각지대는 존재하며, 장애인에게 보다 세심한 지원이 필요한 지점이기도 하다. 이처럼 장애인에게 더욱 가혹한 코로나 시국이 장기

1) 메디컬투데이, 코로나19 사망자 10명 중 2명은 장애인...일반인비 사망률 6.5배 높아, 2021.01.14.

[https://m.healthcare.com/news/news\\_article\\_yong.jsp?mn\\_idx=404079](https://m.healthcare.com/news/news_article_yong.jsp?mn_idx=404079)

2) 국민일보, 이슈 & 탐사 중증장애인 왼팔로만 버틴 11일의 자가격리, 2020-4-6



화되면서 국내·외의 장애인단체에서는 코로나 19 팬데믹이 CRPD 11조(위험상황과 인도적 차원의 긴급사태)에 해당된다며 즉각 이행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sup>3)</sup>

코로나19는 재난에 해당되며, 재난으로부터 장애인의 안전과 보호에 관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 CRPD 11조는 아래와 같다.

#### 1. CRPD 제11조(위험상황과 인도적 차원의 긴급 사태)

당사국은 국제인도법과 국제인권법을 포함한 국제법적 의무에 따라 무력충돌, 인도적 차원의 긴급사태 및 자연재해의 발생을 포함하는 위험상황의 발생 시 장애인을 보호하고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2. 최종권해<sup>4)</sup>

20. 위원회는 당사국이 자연재해를 포함한 위급상황에서 장애의 특성을 고려하여 장애인들의 보호 및 안전을 보장하고, 재난위험감소 정책 및 그 이행의 모든 단계와 단위에서 보편적인 접근성 및 장애포괄성이 더욱 보장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채택 및 시행할 것을 권고 한다.

이에 이번 이슈리포트에서는 CRPD 제11조와 관련 된 법령 및 그간에 정부의 이행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 1. 정의 및 분류

코로나19의 질병분류는 제1급감염병 신종감염병증후군(법정감염병)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1. 나. 사회재난에 해당된다.

3) 에이블뉴스, 한국장애포럼, 12월 2일 ‘코로나 19와 CRPD’ 회의 개최, 2020-11-23

4) 장애인권리위원회가 제출된 국가보고서들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문건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이상 대부분의 권고 사항들은 당사국이 수용함으로써, 자국의 장애인 권리증진과 권리 보호 정책에 반영하게 되며, 차기 국가보고서 제출 시에는 전기 국가보고서에 대한 장애인권리위원회 최종권해에 따라 취한 조치 내용들을 포함시켜서, 당기 국가보고서를 제출하게 된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정의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나.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또한 장애인은 관련 법률에서 안전취약계층과 감염병취약계층으로 정의되고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 제3조(정의) 제9호의3

“안전취약계층”이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말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감염취약계층의 보호 조치)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호흡기와 관련된 감염병으로부터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및 기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대상(이하 “감염취약계층”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감염취약계층에게 의료·방역 물품(「약사법」에 따른 의약외품으로 한정한다)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15.>

## 2. CRPD 제11조 국내 이행 정도

센터에서는 작년 CRPD 모니터링 사업을 진행하면서 제11조(위기상황과 인도적 차원의 긴급사태)의 이행정도를 점검하기 위해 작성하였던 것으로 이를 활용하고자 한다.

지표 1. 재난안전 대응 계획 수립 및 이행절차에 대한 장애 포괄적 접근  
지표 2. 장애유형을 통합적으로 고려한 재난안전 매뉴얼 개발 및 보급

〈지표 1. 재난안전 대응 계획 수립 및 이행절차에 대한 장애 포괄적 접근〉

### 1-1. “재난안전 대응 계획 수립”

#### –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은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의 재난 및 안전관리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최상위 계획으로 도시화·인구집중, 고령화, 기후변화, 신종감염병의 발생 등 재난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국가가 국민을 재난 및 안전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계획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2조 등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재난에 관한 대책과 더불어 안전취약계층의 안전에 관한 대책이 포함되도록 하고 있다.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개요〉

- 향후 5년간 국가 재난 및 안전관리 정책을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과 이를 이행하기 위한 중점과제들을 제시
-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각종 재난관리책임기관들이 세부대책을 수립·운영할 수 있는 지침을 제공
- 국가적 안전관리를 위한 자원의 통합적 운영 및 예방·대비·대응·복구의 각 단계별로 국가적 역량을 통합, 조정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부처별 지역별로 관할과 책임이 분산되어 있는 재난 및 안전관리 사무를 종합적으로 통합·조정하는 방안의 제시
- 재난에 대하여 회복력을 가진 안전한 공동체 형성이 요구되어지고 있는바, 정부 및 공공기관 그리고 각종 민간단체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계획 제시

※ 법적 근거

- 헌법 제34조 제6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2조 및 시행령 제26조

제22조(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⑧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 1. 17.〉

2. 생활안전, 교통안전, 산업안전, 시설안전, 범죄안전, 식품안전, 안전취약계층 안전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안전관리에 관한 대책

1-2. “이행절차에 대한 장애 포괄적 접근”

- 장애인 안전 종합 대책

행정안전부는 2017년 9월 28일 장애인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보편적 접근성과 장애 포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9개부터 합동으로 ‘장애인 안전 종합대책’ 계획을 수립하였다.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1) 장애 특성을 반영한 재난 및 안전관리 강화 : 장애인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정책기반 구축, 체계적인 장애인 재난 및 안전 관리 강화, 장애인 위급한 신고 및 대응체계 강화, 장애인 맞춤형 재난구호 서비스 강화, 장애인 재난정보 및 대피 전달 기술 등 연구 개발
- 2) 안전한 장애인 활동공간 조성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확대, 장애인 안전관리 인프라 확충, 안전한 장애인 주거환경 조성, 장애인 복지·교육 시설 안전관리 강화

- 3) 안전 교육·훈련 강화 및 안전문화 확산 : 장애인 및 보호자 대상 안전 교육 강화, 재난 대응 훈련 참가를 통한 장애인 재난대응 역량 함양, 장애인등 재난 약자 배려 인식 개선 교육 추진, 복지시설 종사자 및 경찰·소방공무원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 장애인 근로자 안전대피 매뉴얼 보급·홍보 및 교육

해당지표는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장애인을 포함하고 있으며, 장애인 안전종합 대책에 있어 장애인 단체의 참여(TF 구성)를 보장하고, 국회 주관 토론회(2017. 7, 2017. 9., 2019. 4.)를 개최하여 장애인 맞춤형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범정부 안전대책이 수립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며, 해당 지표를 이행 중이라고 판단된다.

<지표 2. 장애유형을 통합적으로 고려한 재난안전 매뉴얼 개발 및 보급>

“재난안전 매뉴얼 개발 및 보급”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 제34조의5(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운영) 제9항 제4호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기관리에 필요한 매뉴얼 표준안을 연구·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4. 안전취약계층의 특성을 반영한 연구·개발

「장애인복지법」

- 제29조의2(한국장애인개발원의 설립 등) 제3항 제6호

③ 개발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6. 장애인 재난안전 대응 지침 개발·보급 등 장애인 안전대책 강화를 위한 사업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및 한국장애인개발원(「장애인복지법」)에서 재난 취약계층, 장애인의 재난에 따른 안전 강화를 위한 매뉴얼 및 지침을 언급하고 있으나, 재난 발생 시 대응에 가장 효과적으로 작용하는 표준화된 매뉴얼이 제공되고 있지 않았다.

그간 장애인에 대한 매뉴얼은 서울시특별시 소방재난본부에서 제공하는 ‘시각장애인 재난대응매뉴얼’, ‘장애인 재난위기관리 매뉴얼’, ‘장애인 재난관리 픽토그램 활용가이드’ 등 처럼 시각장애인과 지체장애인에 한해 대응 및 위기관리 매뉴얼만 제공되었으나, 작년 6월 처음으로 감염병 상황에 취약할 수 있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감염병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하였다.

해당 매뉴얼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대구, 경북 지역 코로나19 관련 현장 전문가들과 장애인단체 등이 참여하여 매뉴얼을 마련하였으며,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장애’가 가지는 특수성으로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의사소통 제약, 이동 제약, 감염 취약, 밀접 돌봄, 집단 활동으로 인한 취약성 등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에서 장애인이 겪는 특수성을 장애유형별로 제시하여, 코로나19 대응 현장에서 장애인에 대한 세심한 고려의 출발점이 되도록 하였다.

재난 상황 중 신종 감염병에 해당하는 코로나19에 특정되긴 하지만 장애인단체의 의견이 반영되어 장애 유형별로 취약특성을 고려하여 매뉴얼이 제공되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판단되며 해당지표의 첫 시작점을 정부가 이행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이와 별개로 매뉴얼 발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있었던 작년 9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은 “장애인은 방역 취약계층이 아니다”라고 한 발언이 다소 논란이 있었다. ‘장애인 대상 감염병 대응 매뉴얼’을 살펴보면 서두에 “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한 감염병 대응 및 지원 계획 수립 등에 참고”라고 되어 있고, 매뉴얼 발표 당시 복지부 보도자료를 살펴보면 “이번 매뉴얼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장애인의 고려사항을 처음 적용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감염병 상황에서 취약계층 대응 방안 마련의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

힌 점들의 내용을 비추어봤을 때 해당 발언은 매뉴얼의 발간 취지와는 맞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매뉴얼을 발간하였다고 장애인의 전체를 방역취약계층이라고 볼 수 없는 복지부의 입장도 이해되는 바이나 소관부처의 수장으로써 세심한 주의가 필요했다고 생각된다.

### 3. 맺으며

현재의 코로나19와 CRPD 11조에 따른 협약요구사항을 기준으로 이행정도를 살펴보았다. 정부는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점진적으로 이행 수준을 높이고 있으나,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찾아볼 수 없었고, 최근 ‘장애인 대상 감염병 대응 매뉴얼’을 제외하면 장애 유형별 특수성을 반영한 위기관리 매뉴얼 또한 전무하였다. 이에 전반적으로 해당지표를 정부가 수행은 하되 질적인 측면에서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코로나19가 있기 전,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가 있었다. 당시에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정부의 대응지침으로 인해 장애인 당사자들이 차별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특히 중증장애인들은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지 못해 병원에 입원해야 했다. 자가격리대상 뇌병변 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 중단으로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모두 받을 수 없었고, 신장투석치료 등 건강관리에 어려움 겪었다.<sup>5)</sup>

감염병인 코로나19가 1년 넘게 장기화되고 아직도 진행 중이고, 언제 끝날지도 미지수다. 이러한 불안한 시국에 사회, 경제적인 측면을 제외한다면 국민 모두의 관심은 생명과 직접 연결되는 개인의 안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을 것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장애인은 사회, 안전, 감염, 방역, 재난 등에 취약계층이다. 취약계층인 만큼 코로나 시국에 사회적 안전망은 장애인의 생명권과도 직결된다.

국민 모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국민 모두 동일한 피해를 입고 있지 않는 것 같다.

5) 비마이너, “장애인 자가 격리 말고 대책 없는 메르스 지침은 ‘장애인 차별’ ” (2016. 10. 18.), <http://www.beminor.com/detail.php?number=10224>

# 미디어모니터링 소개





# 장애 관련 미디어 모니터링 방향과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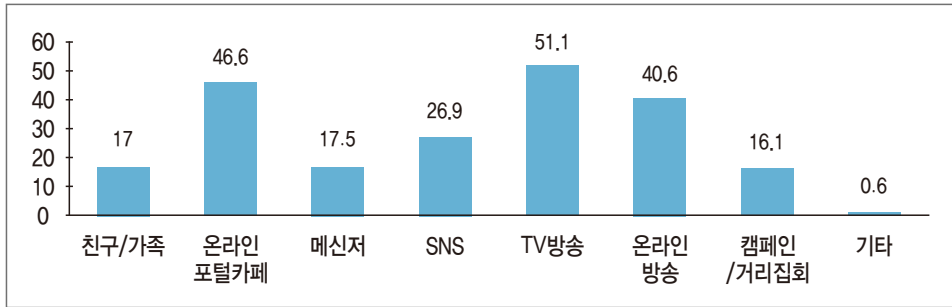
한지윤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연구원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는 등 사회적 약자 인권이 우리사회 의제로 대두된 지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이들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 관련 뉴스는 넘쳐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19년 인권침해·차별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1순위)에서 장애인이 36.2%로 가장 높았으며 여성이 16.4%, 이주민 14.7%, 노인 13.1%, 한부모 가족 6.1%, 난민 5.1%, 어린이/청소년 4.9%, 북한이탈주민 3.6%로 나타났다.(인권침해·차별을 많이 받는 사람, 국가인권위원회, 2020) 장애인이 월등히 높은 비중으로 인권침해,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다. 또한 ‘사회통합을 위해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할 집단’을 조사한 결과 정부 29.7%, 국회 22.7%, 교육계 15.2%, 언론 13.7%, 노동조합 단체 5.6%, 법조계 5.2%, 기업 4.1%, 시민단체 2.9%, 종교단체 0.9%로 나타났다.(사회통합을 위해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할 집단, 한국행정연구원, 2020) 우리사회는 정부와 국회, 교육계 다음으로 언론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 하지만 인권의 침해 또는 차별로 이어질 수 있는 비하나 혐오 표현을 언론을 포함한 미디어를 통해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사람들이 혐오표현을 접하게 된 경로에 대한 중복 응답 결과를 보면 TV방송 51.1%, 온라인 포털/카페 46.6%, 온라인 방송 40.6%, SNS 26.9%, 메신저 서비스 17.5%, 친구/가족 17.0%, 캠페인/거리집회 16.1%, 기타 0.6%로 나타났다.(혐오표현을 접하게 된 경로, 국가인권위원회, 2020) TV는 뉴스뿐만 아니라 시사교양, 오락, 드라마 등 다양한 종류의 콘텐츠를 송출하고 있다. 대중에 대한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다.

### 〈 혐오 표현을 접하게 된 경로(중복응답) 〉

(단위: %)



많은 사람들이 정보를 인터넷이나 TV를 통해 습득하고 있지만 여전히 신문을 통해 정보를 얻는 사람도 많다. 포털을 통해서도 신문지면의 내용을 접하기도 하지만 중장년 이상은 아직까지 종이신문을 통해 뉴스를 접하고 있다. 2021년에 진행되는 미디어 모니터링은 크게 신문과 방송을 대상으로 한다. 신문은 국내 10대 주요일간지 보도내용을, 방송은 공중파 및 종합편성채널의 주요 뉴스, 시사교양, 오락, 드라마가 포함되어 있다. 모니터링 기간은 3월에서 12월이며, 매월 그 전달에 보도 내용 및 방영된 프로그램을 모니터링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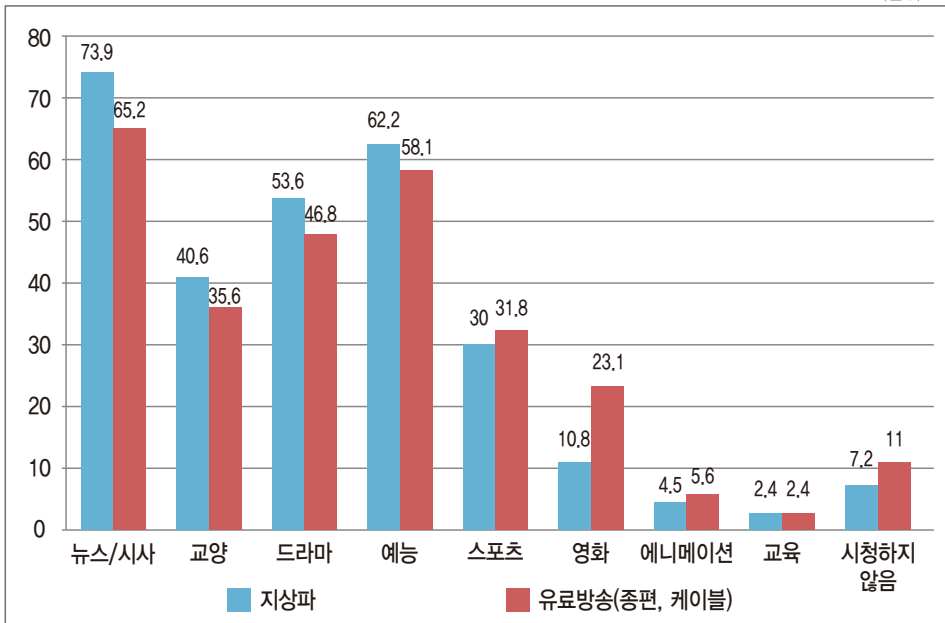
#### 방송 모니터링

현재 많은 방송매체들이 존재하며 많은 사람들이 방송을 통해 정보를 얻는다. 지상파는 TV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채널로 이외에는 모두 케이블방송 또는 유료방송으로 볼 수 있다. 케이블에는 종합편성채널과 케이블채널로 구분한다. 종합편성채널은 지상파처럼 모든 유형의 프로그램을 방영할 수 있지만, 케이블 채널은 하나의 분야만 방영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지상파가 KBS, MBC, SBS, EBS로 4개의 방송사가 있으며 종편에는 JTBC, MBN, TV조선, 채널A 총 4개가 방영되고 있다. 이 외에 tvN, YTN 등은 모두 케이블 방송으로 분류된다. 이번 모니터링에서는 한 채널에서 다양한 분야를 볼 수 있는 지상파와 종편 총 8개의 방송사를 대상으로 한다.

각 방송사별로 방영되는 프로그램은 뉴스, 교양, 예능, 드라마,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가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는 프로그램은 지상파에서 뉴스/시사가 73.9%로 가장 높았으며, 드라마가 53.6%, 예능이 62.2%, 교양이 40.6%, 스포츠 30%, 영화 10.8%, 애니메이션 4.5%, 시청하지 않음 7.2%로 나타났다. 종편, 케이블이 포함되는 유료방송에서는 뉴스/시사가 65.2%, 교양 35.6%, 드라마 46.8%, 예능 58.1%, 스포츠 31.5%, 영화 23.1%, 애니메이션 5.6%, 교육 2.4%, 시청하지 않음이 11.0%이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많은 사람들이 보는 프로그램은 뉴스/시사, 드라마, 예능으로 다른 프로그램보다 높은 비율로 시청하고 있다.

〈 2019년 방송프로그램 유형별 시청여부(중복응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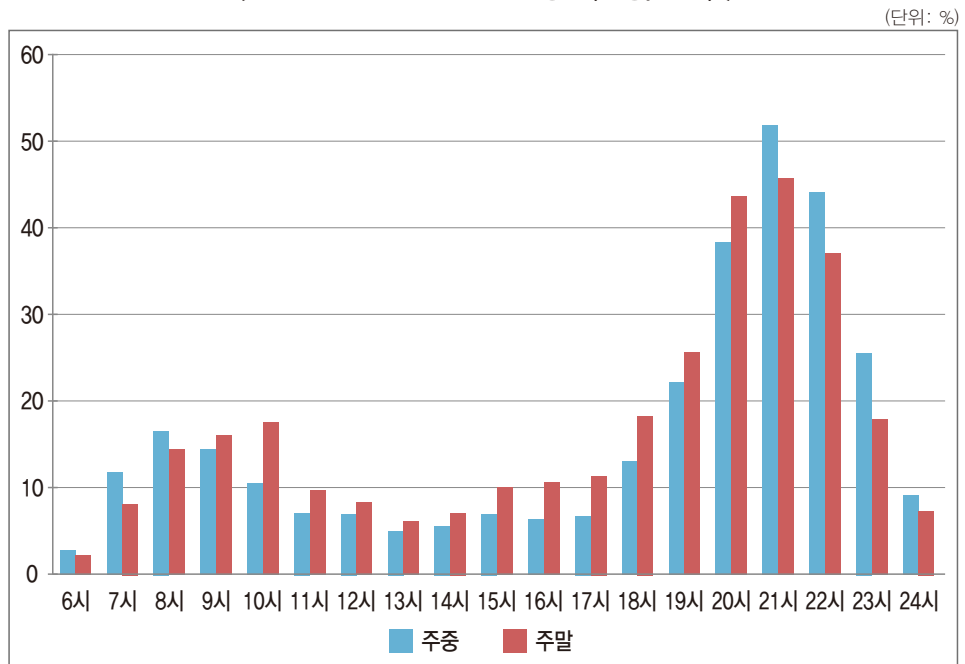
(단위: %)



2020년 방송모니터링에서는 뉴스, 시사, 예능, 드라마를 중심으로 진행한다. 모니터링을 진행할 프로그램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필요하다. 사람들은 다양한 시간대에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있기에 시청 시간을 공통적인 선정기준으로 정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조사한 ‘2019년 시간대별 매체 이용률’을 보면 오전 6시, 오전 11시에서 17시까지는 주중, 주말 모두 10%가 안 되는

낮은 시청률이고,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는 10% 내외의 이용률을 보였다. 가장 높은 이용 시간대는 17시에서 24시 사이로 최소 12%에서 최대 51.5%까지 나타내고 있다. <시간대별 매체 이용률(주중/주말), 방송통신위원회, 2020년> 주중과 주말에 따라 비율은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17시에서 24시 사이에 시청을 하는 걸 알 수 있다.

〈 2019년 시간대별 매체 이용률(주중/주말) 〉



오후 5시에서 24시 사이에 방영되는 분야별 선정기준을 보면, 먼저 뉴스는 각 방송사별로 메인 뉴스가 존재한다. 메인뉴스는 뉴스 당일에 일어난 모든 일을 종합으로 다루기 때문에 모니터링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사람들이 뉴스와 함께 많이 보는 시사 프로그램은 대부분 뉴스에서 나온 주제를 심층적으로 다룬다. 이전에는 실종, 살인 등 무거운 사건에 대해 보도하는 프로그램이 주를 이루었지만, 최근에는 좀 더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이에 시사프로그램은 오후 5시에서 24시 이내에 방영하고 사건, 사고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면을 주제로 방송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중점으로 모니터링하고자 한다.

최근 국내 예능은 크게 음악, 요리, 버라이어티가 주도하고 있다. 2020년 2월을 기준으로 대부분의 방송사에서 음악프로그램을 적게는 1개에서 많게는 3,4개씩 방영하고 있을 정도로 음악예능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요리를 만들거나 먹으면서 진행하는 프로그램도 몇 년동안 급증하고 있다. 기존의 예능에서 꾸준히 방영되고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은 버라이어티로 2000년대 이후 지속적인 방영을 하고 있다.

토크쇼가 많은 대화가 이루어지기에 모니터링에 가장 적합하지만 요즘은 감소하는 추세이기에 제외되었으며, 현재 예능을 주도하는 음악이나 요리프로그램은 노래를 부르거나 요리를 만드는 부분이 대부분으로 모니터링에 제약이 많아 선정하지 않았다. 버라이어티는 대화, 행동 등 다양한 형태로 표현하고 진행된다. 그리고 버라이어티는 꾸준히 사랑받아온 리얼 버라이어티와 몇 년 동안 인기 상승중인 관찰 버라이어티가 포함된다. 방송사에서도 리얼/관찰 버라이어티를 모두 방영하거나 둘 중 하나만 방영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꾸준히 인기가 있고 장수프로그램이 많은 리얼 버라이어티를 중점으로 모니터링하되 방송사에서 방영하지 않을 경우 관찰 버라이어티를 대상으로 한다.

드라마는 방영 요일, 시청제한연령 등 다양한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다. 하지만 지상파와 종편방송 모두 드라마를 아예 방영하지 않거나 1개에서 3개의 적은 수만 방영하고 있다. 따라서 방영요일, 시청제한연령 등의 기준은 사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한 번 드라마가 종영되면 바로 다음 작품을 할 수 있을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최근 방영을 시작한 드라마를 선정하여 모니터링을 진행한다.

이와 같은 기준에서 선정한 프로그램은 뉴스 8개, 시사 7개, 예능 6개, 드라마 5개로 총 26개의 프로그램이다. 그리고 만약 해당 프로그램이 종영된다면 위와 같은 조건의 프로그램을 새로 선정하여 진행하게 된다. 모니터링의 성격상 실시간 시청은 어렵기 때문에 뉴스는 '네이버 뉴스'를 통해 모니터링 하며, 그 외에 시사, 예능, 드라마는 '웨이브'를 사용한다. '웨이브'에 없는 프로그램은 해당 방송사 사이트 다시보기를 통해 진행하게 된다.

〈 모니터링 대상 프로그램(2020년 02월 기준) 〉

분류	채널	뉴스	시사	예능	드라마
지상파	SBS	8시 뉴스	궁금한 이야기 Y	집사부일체	펜트하우스2
	KBS	9시 뉴스	시사기획 창	1박2일	달이뜨는강
	MBC	8시 뉴스	실화탐사대	놀면 뭐하니	밥이 되어라
	EBS	5시 뉴스	없음	없음	없음
중편	TV조선	9시 뉴스	탐사보도 세븐	우리 이혼했어요	결혼작사 이혼작곡
	JTBC	7시 뉴스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아는 형님	시지프스
	MBN	8시 뉴스	판도라	없음	없음
	채널A	7시 뉴스	천일야사	요즘 육아 금쪽같은 내새끼	없음

모니터링의 양적 분석에서는 장애에 대한 보도나 내용의 양, 장애유형에 대해 분석하며, 질적인 부분에서는 해당 방송에서 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지, 대화 또는 행동으로 장애에 대한 부정적이거나 비하하는 표현을 하는지 확인하게 된다. 그리고 장애인식개선에 기여하는 표현이 있다면 이를 좋은 사례로 선정하고자 한다. 장애 관련 내용에 대한 발췌 기준은 「장애인복지법」이 정한 15가지 법정 장애유형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정신질환 관련 내용 또는 보도는 정신장애 분야로 분류한다. 그리고 장애가 포함된 내용이더라도 부수적으로 언급되는 경우는 제외하며 보도 또는 방영되는 내용에서 장애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 뉘앙스, 행동은 포함한다.

〈 방송 모니터링 분석방법 〉

구분	내 용	
방송사	지상파	KBS, SBS, MBC, EBS
	중편	JTVC, MBN, TV조선, 채널A
프로그램 유형 및 선정기준	공통	17시부터 24시까지 방송하는 프로그램
	뉴스	메인뉴스
	시사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시사프로그램
	예능	1순위 리얼 버라이어티 2순위 관찰 버라이어티
	드라마	최근 방영 시작한 드라마

분석 기준	양적	방송의 양	방송사별, 각 프로그램별 장애 관련 내용 방송 건 수
		장애유형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언어, 발달(자폐, 지적), 정신, 안면, 장루요루, 신장, 심장, 간, 호흡기, 뇌전증
		방송 내용	노동/취업, 교육/학습, 접근성/편의, 스포츠/레저, 문화/관광/예술, 보건/재활, 소득/생계, 자립/탈시설, 제도/행정, 인권/권리, 인물/인터뷰, 자선/봉사, 기타
	질적	장애 비하표현	대화 또는 행동을 통한 장애에 대한 부정적, 비판적 표현
긍정적 내용		장애인 인식개선에 기여하는 표현	
키워드	“장애”, “자폐”, “발달”, “희귀병”, “다운증후군”, “특수교육”, “특수학교”, “휠체어”, “목발”, “편의시설”, “콜택시”, “특별교통수단”, “저상버스”, “이동권”, “유니버설디자인”, “농인”, “농아인”, “병어리”, “맹인”, “장님”, “절름발이”, “장애우”, “얕은뱅이”, “기형아”, “미숙아” 등		
활용 프로그램	네이버 뉴스, 웨이브, 방송사 사이트		
장애 관련 내용의 기준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장애인복지법」 이 정한 15가지 법정 장애유형을 대상으로 진행</li> <li>2. 정신질환 관련 내용 또는 보도는 정신장애 분야로 분류</li> <li>3. 장애가 포함된 내용이더라도 부수적으로 언급되는 경우는 제외</li> <li>4. 보도 또는 방영되는 내용에서 장애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 뉘앙스, 행동은 포함</li> </ol>		

## 신문 모니터링

신문 모니터링은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한겨레신문, 서울신문, 국민일보, 문화일보, 세계일보, 경향신문, 한국일보(이상 무순) 총 10대 중앙 일간지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10대 일간지에서 지면을 통해 보도하는 자료를 중심으로 모니터링하며 인터넷 기사는 제외한다. 모니터링은 신문스크랩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사이트인 ‘아이서퍼’ 를 통해 진행하며 모니터링에 사용할 키워드는 “장애”, “자폐”, “발달”, “희귀병”, “다운증후군”, “특수교육”, “특수학교”, “휠체어”, “목발”, “편의시설”, “콜택시”, “특별교통수단”, “저상버스”, “이동권”, “유니버설디자인”, “농인”, “농아인”, “병어리”, “맹인”, “장님”, “절름발이”, “장애우”, “얕은뱅이”, “기형아”, “미숙아” 등을 활용한다.

분석방법은 먼저 양적 기준으로 기사의 양, 보도 지면, 장애 유형, 기사의 내용 측면에서 진행한다. 신문의 경우 이슈에 따라 같은 내용의 보도가 각 신문사 별로 보도되거나 여러 번 보도하는 등 큰 문제가 되거나 사회적인 관심에 따라 양적 결과가 달라지기에 양적 기준을 통해 한 해의 이슈나 장애 관련 보도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 질적 기준에서는 장애를 비하하거나 부정적인 표현을 파악하며 장애인식개선에 기여하는 좋은 기사를 선정하고자 한다.

장애관련 기사를 발췌하는 기준은 총 다섯 가지이다. 첫째, 원칙적으로 「장애인복지법」이 정한 15가지 법정 장애유형을 대상으로 한다. 둘째, 정신질환 관련 기사는 정신장애 기사에 포함하며, 셋째, 장애관련 기사라고 하더라도 평가할만한 가치가 없는 단신이나 장애가 부수적으로 언급되는 기사는 제외한다. 넷째, 장애관련 기사라도 기업이나 기관의 광고성 기사(에드버토리얼)는 대상에서 제외하고, 다섯째, 장애인뿐 아니라 아동, 노인 등 여러 집단을 동시에 다루는 기사의 경우, 큰 제목과 작은 제목에 ‘장애’가 언급되거나 기사 내용이 ‘장애’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기사만 대상에 포함시킨다.

### 〈 신문 모니터링 분석방법 〉

구분	내 용	
신문사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한겨레신문, 서울신문, 국민일보, 문화일보, 세계일보, 경향신문, 한국일보	
분석 기준	기사의 양	언론사별 장애 관련 기사 보도 수
	지면	1면, 종합, 정치, 사회, 경제, 국제, 스포츠, 문화, 인물, 건강, 오피니언, 특집기획, 기타
	장애유형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언어, 발달(자폐, 지적), 정신, 장루요루, 신장, 심장, 간,
	기사 내용	노동/취업, 교육/학습, 접근성/편의, 스포츠/레저, 문화/관광/예술, 보건/재활, 소득/생계, 자립/탈시설, 제도/행정, 인권/권리, 인물/인터뷰, 자선/봉사, 기타
질적	장애 비하표현	각 언론사에서 보도하는 장애 관련 부정적 또는 비하 표현
	좋은 기사	장애인 인식개선에 기여하는 표현
키워드	“장애”, “자폐”, “발달”, “희귀병”, “다운증후군”, “특수교육”, “특수 학교”, “휠체어”, “목발”, “편의시설”, “콜택시”, “특별교통수단”, “저상버스”, “이동권”, “유니버설디자인”, “농인”, “농아인”, “병어리”, “맹인”, “장님”, “절름발이”, “장애우”, “얇은뺨이”, “기형아”, “미숙아” 등	
활용 프로그램	아이서퍼	



장애 관련 내용의 기준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원칙적으로 「장애인복지법」이 정한 15가지 법정 장애유형을 대상으로 진행</li> <li>2. 정신질환 관련 기사는 정신장애 기사에 포함.</li> <li>3. 장애관련 기사라고 하더라도 평가할만한 가치가 없는 단신이나 장애가 부수적으로 언급되는 기사는 제외</li> <li>4. 장애관련 기사라도 기업이나 기관의 광고성 기사(에드버토리얼)는 대상에서 제외</li> <li>5. 장애인뿐 아니라 아동, 노인 등 여러 집단을 동시에 다루는 기사의 경우, 큰 제목과 작은 제목에 '장애'가 언급되거나 기사 내용이 '장애'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기사만 대상에 포함</li> </ol>
-----------------	--

이렇게 방송 및 언론 모니터링을 통해 분석한 결과는 두 달에 한번 한국장애인인권포럼 및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홈페이지에 기재되며, 보도자료 배포 및 각 방송사 및 언론사에 시정을 요청할 예정이다. 단순히 시정 요청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시정하면 좋을지 방향을 제시하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반영될 수 있도록 활동하고자 한다.

NAOMI WATTS ANDREW LINCOLN JACKI WEAVER

"A VERY EFFECTIVE REMINDER OF WHAT WE CAN OVERCOME WITH THE PEOPLE WE LOVE."

-COLLIDER

Official Selection

tiff

Toronto International Film Festival 2020



BASED ON THE INSPIRATIONAL TRUE STORY

# PENGUIN BLOOM

NETFLIX PRESENTS IN ASSOCIATION WITH SCREEN AUSTRALIA ENDEAVOR CONTENT ROADSHOW FILMS AND CREATE NSW A MADE UP STORIES JAM TART FILMS AND BROADTALK PRODUCTION  
NAOMI WATTS ANDREW LINCOLN AND JACKI WEAVER "PENGUIN BLOOM" RACHEL HOUSE LEEANNA WALSMAN LISA HENSLEY INTRODUCING GRIFFIN MURRAY-JOHNSTON FELIX CAMERON  
ABE CLIFFORD-BARR CASTING KIRSTY MCGREGOR COA STEVE RAY COA COSTUME DESIGNER JOANNA MAE PARK PRODUCTION DESIGNER ANNIE BEAUCHAMP MAKEUP MARCELO ZARVOS EDITOR MARIA PAPDOUTSIS DIRECTOR OF PHOTOGRAPHY SAM CHIPLIN  
EXECUTIVE PRODUCERS SONIA AMOROSO GEORGE KEKELI MERYL METNI RICCI SWART SAM BLOOM CAMERON BLOOM BRADLEY TREVOR GREIVE JOEL PEARLMAN EDWINA WADDY JILL BILCOCK  
PRODUCED BY BARBARA GIBBS JASON DE BEER PRODUCED BY EMMA J. COOPER CO-PRODUCED BY BRUNA PAPANDREA CO-PRODUCED BY STEVE HUTENSKY CO-PRODUCED BY JODI MATTERSON CO-PRODUCED BY NAOMI WATTS  
BASED ON THE BOOK BY CAMERON BLOOM AND BRADLEY TREVOR GREIVE WRITTEN BY SHAUN GRANT AND HARRY CRIPPS DIRECTED BY GLENDYNN IWIN

Screen Australia  
NSW  
ENDEAVOR CONTENT  
Made Up Stories

COMING SOON | NETFLIX

Broadtalk NETFLIX  
Jam Tart Films

©2020 Penguin Books Pty Ltd. All Rights Reserved. Penguin Books, the Penguin logo and the Penguin logo are trademarks of Penguin Books Pty Ltd. All Rights Reserved.

## 중도장애인의 장애수용 과정 〈펭귄 블룸〉

류미레 푸른영상, 독립영화 감독

비대면 문화가 일상화되면서 온 국민이 사랑하는 프로그램 ‘전국노래자랑’의 촬영이 중단되었다고 합니다. 사상 초유의 재택 환경 속에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영화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직접 극장으로 발걸음을 하지 않아도 안방에서 쉽게 구해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번 호에 준비한 영화는 넷플릭스에서 만날 수 있는 〈펭귄 블룸〉입니다. 갑작스런 사고를 당한 한 여성이 가족들의 사랑으로 희망을 찾아가는 과정이 담겨있는 아주 따뜻한 영화입니다. 제목만을 들었을 때에는 블룸이라는 이름의 펭귄이 주인공인 영화일 것 같지요? 그런데 이 영화에는 펭귄이 아닌 까치가 등장합니다. 펭귄 없는 펭귄 영화라는 것이 이 영화의 반전이죠. 까치의 이름은 펭귄 블룸, 그러니까 블룸가족의 일원인 까치가 있는데 그 이름이 펭귄인 겁니다.

블룸가의 구성원은 부부와 아들 삼형제인데요 늘 활기차고 행복하던 어느 날 엄마 샘이 사고를 당해 등허리 아래쪽으로 마비가 되어 모든 것이 변해 버립니다. 특히 첫째 아들 노아는 자기 때문에 엄마가 사고를 당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죄책감이 아주 큼니다. 어느 날 노아는 해변에서 새 한 마리를 발견하는데요 등지에서 떨어져서 죽을 위험에 처한 까치를 구한 노아는 집으로 데려와서 키우게 됩니다. 약한 펭귄이 점점 건강해지며 날개를 펼쳐 날아가는 과정과 함께 엄마 샘이 자신의 상황을 받아들이는 과정이 잔잔하게 펼쳐집니다.

이 영화는 장애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하고 깊게 생각할 수 있는 영화입니다. 산산이 조각난 것처럼 보였던 한 여자의 삶이 가족의 사랑 속에서 환해지고 역시나 상처를 회복해가는 한 마리 새를 통해서 관객들 또한 치유의 경험을 선물

받을 수 있습니다. 나오미 왓츠, 앤드류 링컨, 재키 위버 등 배우들의 연기도 아름답지만 블룸가가 위치해있는 마을의 풍광도 아주 아름다워서 코로나에 지친 관객들도 치유의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서핑을 할 만큼 활동적인 샘이 사고를 당하는 순간은 어이가 없을 정도입니다. 온 가족이 행복한 태국여행, 노아는 저기에 올라가면 멋진 풍경을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엄마를 부릅니다. 한 발 한 발 계단을 올라가고 멋있다는 탄성이 나오는 것도 잠시, 엄마가 기댄 난간이 무너지면서 엄마는 추락하고 맙니다. 노아가 찍은 홈비디오에 그 장면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비명과 함께 저 아래 쓰러져있는 엄마의 몸까지도요.

블룸가의 생기발랄한 일상이 여행지에서의 사고로 산산조각나는 순간은 프롤로그에서 속도감있게 표현됩니다. 그리고 장면이 바뀌면 쓸쓸한 풍경들이 느리게 펼쳐집니다. 분주한 아침, 가족들이 모두 나가고 나면 샘은 혼자 쓸쓸히 하루를 보냅니다. 그리고 다시 가족들이 돌아오면 또 풍경은 분주해집니다. 세 아이 모두 손이 많이 가는 초등학교생들인데 남편 카메론 혼자 삼형제와 샘을 돌보느라 동분서주하는 모습을 보니 제가 다 숨이 차더군요. 아이들은 모든 도움을 아빠에게 요청하고 샘은 침대에 누워서 그 모든 소리들을 듣고만 있어야 합니다. 서핑을 즐길만큼 활동적이었던 샘의 무기력이 느껴지지시지요?

중도장애를 갖게 되었을 때 가장 힘든 건 당사자겠지만 가족들의 어려움 또한 가볍지 않을 것입니다. 영화는 모두의 마음과 노력을 섬세하게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샘만큼 힘든 사람이 첫째 노아입니다. 노아는 엄마의 사고가 자기 때문이라고 자책합니다. 작은 카메라를 들고 자기만의 영화를 만들고 있는 노아의 말들이 영화의 나레이션이 됩니다.

“태국에는 매년 2천만명의 관광객이 다녀간다. 4천만개의 손이 그 난간을 붙잡았을 것이다. 그런데 왜 우리 엄마여야 했을까. 차라리 나였어야 하지 않을까?”

이 심성 고운 아이는 다친 새도 그냥 지나치지 못하지요. 등지에서 떨어진

까치 새끼가 버둥거리고 있을 때 까치를 노리는 도마뱀을 보고 용기를 내서 쫓아버립니다. 그리고 집으로 데려오지요. 우울의 늪에 빠진 샘은 까치 펭귄을 반기지 않습니다. 펭귄을 대면한 샘이 얼굴을 찡그리는 이유가 단지 귀찮음 때문만은 아니겠지요. 샘도, 그리고 관객도 펭귄과 샘을 같이 생각하게 되는 시작점이지요. 가라앉은 채 우울한 샘과는 달리 펭귄은 불편한 몸으로도 온갖 데를 다 다닙니다. 샘의 고요는 그렇게 깨어집니다. 다행스럽게도 고요와 함께 무기력과 우울도 깨져갑니다. 아마도 CG로 표현되었을 장면이었지만 까치 펭귄이 사고치는 장면들이 참 재미있고 신기합니다. 펭귄이 그렇게 난리를 쳐놓고 나면 샘은 휠체어를 끌고 다니면서 그것을 수습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샘 또한 펭귄에게 마음을 엽니다. 어리고 상처입었던



\* 상단: 실화 주인공 하단: 영화 주인공

까치는 블루 가족의 보살핌 속에서 치유되고 성장해서 떠나갑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블루가족에게 큰 힘이 됩니다. 날지 못하던 새가 날게 되는 동안, 샘 또한 자기만의 방식으로 인생을 걸어갑니다. 1월에 공개되었으니 비교적 최신작인 이 영화가 오롯이 장애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아주 인상적인 장면이 있어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며 자신의 현재를 사랑하게 된 샘이 처음으로 가족과 함께 소풍을 갑니다. 수평선이 보이는 높은 언덕 같은 곳에 도착하자 가족들은 잠시 샘을 내려놓고 자리를 펴니다. 뒤쪽에서 가족들이 함께 즐길 것들을 준비하는 동안 앉아 있는 샘이 뭔가를 봅니다. 샘이 눈길 저 편 절벽 끝에는 사고가 나기 전의 샘이 서있습니다. 그리고 옛날 모습의 샘은 웃으면서 손을 흔들며 현재의 샘에게 작별을 고합니다.

이 장면이 인상적이었던 것은 몇 년 전에 들었던 한 장애여성의 이야기 때문이었어요. 그 분의 사고도 한 순간이었는데요 버스가 크게 흔들려서 넘어졌는데 그 때 이후로 더 이상 걸을 수 없게 되었는데요. 처음 몇 년 동안은 꿈 속에서 걷어다녔대요. 그리고 한참의 시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휠체어를 탄 자기가 등장하더라고요. 그 여성처럼 샘 또한 변화된 자기를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죠. 늘 두 다리로 서있거나 걷는 사람들의 세계에서 지내다가 혼자서는 이불도 덮기 힘든 처지가 되어버린 샘은 한동안 결코 돌아갈 수 없는데도 현재의 몸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하지만 펭귄을 만나고, 노아의 고백을 듣고, 카약을 시작하면서 현재의 자기를 받아들이자 늘 돌아가고 싶어했던 '걷는 나' 는 그렇게 웃으면서 작별을 고합니다. 장애수용의 순간을 이렇게나 아름답게 표현한 영화가 또 있을까요.

영화는 펭귄의 성장과 샘의 변화를 나란히 보여줍니다. 약한 펭귄이 점점 건강해지며 날개를 펼쳐 날아가는 과정과, 삶을 부정하고 좌절감만 가득했던 샘이 카약을 배우고 새롭게 삶을 받아들이는 과정이 기차의 평행선처럼 나란히 가며 관객들의 마음에 스며듭니다.



더 이상 예전으로는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순간 좌절하고 절망하게 되지만 결국 수용하게 되는 시간, 변화된 나를 받아들이고 결국 나의 삶을 사랑하게 되는 시간, 그 시간들을 함께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